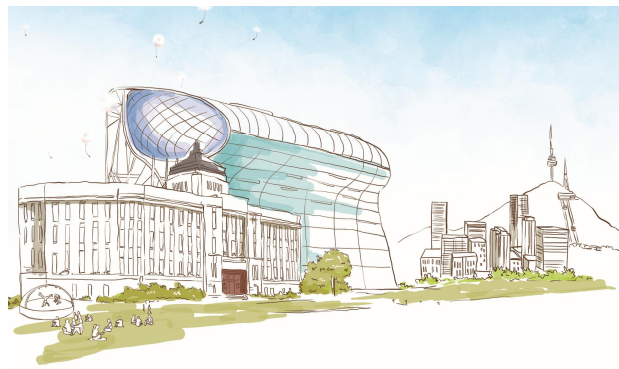


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549			시 민	
결재일자	2014. 1. 21.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마형민	조미선	성은희	01/21 조현옥
방침번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4 대체교사 지원계획



(2014. 1.)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보육교직원) 무 <input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영유아보육법)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우리말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 (보건복지부)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 (보건복지부)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 (어린이집 연합회) 무 <input type="checkbox"/>
	● 시 산 하 기 관 : 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무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4년도 대체교사 지원 계획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에 따른 어린이집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보수교육 및 휴가 등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는 3년마다 40시간의 직무교육과 80시간의 승급교육,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유급휴가(1년 이상 근무자) 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 어린이집에서 보육공백 및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로 법령 준수 어려움
- 어린이집 운영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공백 최소화 필요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 서울시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시장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2013년도 추진실적

○ 지원개요 및 실적

구 분	대체교사 파견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전체 어린이집	
지원내용	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파견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시 인건비 5만원(1일) 지원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 : 5일 이상 시 지원(다만, 야간과정 및 주말반 미지원) ▶ 휴 가 : 1회, 5일 이내 지원 ▶ 경 조 사 :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속(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포함) 사망(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 이내) ▶ 병 가 : 2주 이상의 병가(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 기 타 :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하여도 인력 및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사업수행	시·구 보육정보센터	
예산구분	국비 20%, 시비 80%	시비 50%, 구비 50%
지원실적	▶ 보육교사 11,492명 지원 대체교사 221명 : 국비 89명, 시비 132명	▶ 보육교사 8,496명 지원
	보육교사 총 19,988명 지원	
예산현황	4,286,755천원 (국비 352,422천원 포함)	1,062,000천원(구비 50% 별도)

※ '13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별 배정인원 (단위 : 명)

총계 : 221명(국비 : 89명, 시비 : 132명)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4	4	4	5	5	8	8	8	11	8	9	15	9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6	7	11	13	11	7	8	8	10	7	9	14	12

□ 문 제 점

- 보건복지부 사업의 경우 대체교사 파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서울시 대체교사 파견 사업은 전화접수만 가능하여 비효율 초래
- 대체교사 신청의 변동성에 대응한 탄력적 채용 어려움
 - 인접 자치구에 파견지원 가능한 대체교사가 있어도 구별 지원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움
 - 대체교사 지원 신청이 많아지는 시기에 공급인력 부족

-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

II 2014년도 지원계획

□ 추진 방향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14. 6월 中)
- 대체교사 파견지원 인력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기존 자치구별 지원에서 권역별 지원으로 범위 확대
- 대체교사 신청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
 - 대체교사 신청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 증원배치
 - 대체교사 미신청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지원 서비스 적극 안내
- 대체교사에 대한 어린이집의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 서울시, 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 홍보글 게시
 - 어린이집 업무연락, 전화 등을 통해 대체교사 이용 권장 안내

□ 2014년도 지원개요

- 지원시기 : 2014년 1월부터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 1.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2.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5만원/일)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예산 및 목표

	2014 예산액(천원)	지원목표	비고
합 계	5,977,159	21,288명 (신청자 100%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4,915,159 (× 412,159 포함)	12,792명	국비사업 : 103명 시비사업 : 143명
대체교사 인건비지원(5만원/1일)	1,062,000 (구비 50% 별도)	8,4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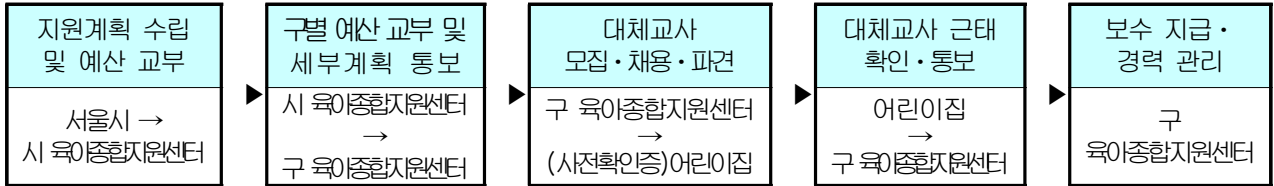
- **지원기준** ⇒ 휴가 등이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무급휴가인 경우 지원 불가)
 - 보수교육 : 5일 이상 보수교육 시 2주 이내 지원(야간과정 및 주말반은 미지원)
 - 휴 가 : 1회 5일 이내
 - 경 조 사 :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속(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포함) 사망(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 이내)
 - 병 가 : 2주 이상의 병가(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 기 타 :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하여도 인력 및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 산전후 휴가는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 ▶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산전후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90일간의 산전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지원 가능
 - ⇒ 위의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 불가
- ※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및 대표자는 대체교사 미지원. 다만,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보수교육에 한해 대체교사 지원

- **지원순위(지원신청 경합시 적용)**
 - 국비지원 대체교사(103명)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함
 - ▶ 연가, 결혼휴가 : 현 어린이집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장기 근속자 우선 지원
 - 시비지원 대체교사(143명) : 신청 중복 시 아래 순서에 의함
 - ▶ 1순위 : 비담임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 ▶ 2순위 : 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 근속자
- ※ 상기 지원순위는 신청자가 많아 유희인력이 없을 시 적용되며, 유희인력 있을 시에는 우선순위 미적용. 또한 대기인력 부족 시 인건비 지원(1일 5만원)절차 안내하여 신청자에 대해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대체교사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활용**
 - 국비지원 대체교사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시스템에 운영 중
 - 시비지원 대체교사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14.7월부터 운영 예정

□ 지원 체계

대체교사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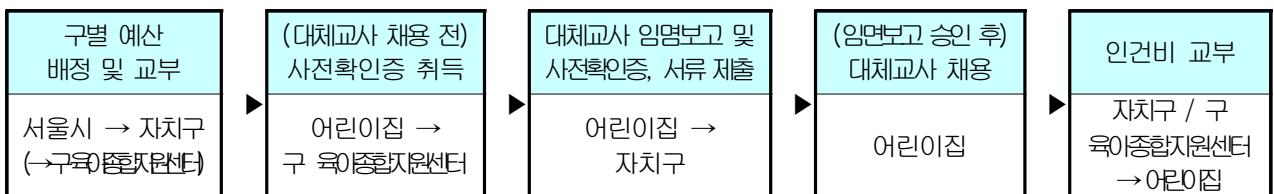
○ 총괄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별 어린이집 수를 감안해 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
 - ※ 다만, 사업실적을 감안해 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액 조정 가능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체교사 채용 시 근무지역이 바뀔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대체교사 교육, 홍보 등 총괄
-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을 매월 5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 업무 운영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인건비 지급 등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을 매월 3일까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함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지급 : 자치구 또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수행하되, 자치구에서 월별 지원현황 파악
- 지원자격 미비 등으로 대체교사 신청 반려시, 대장에 반려사유 기재

○ 사전확인증(붙임3) 절차 반드시 이행

-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임면보고 승인 시 사전확인증 반드시 징구
- 사전확인증 발급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채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증 발급받아야 인건비 지원됨
 - ※ 사전확인증 발급 목적 : 중복지원, 부당수령 등 사전방지

III 세부 유의사항

□ 권역별 대체교사 지원

- 효율적인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인접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파견 지원 요청 시 지원토록 함

- 자치구 교차파견 가능 권역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봉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종로구	중랑구	은평구	구로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광진구	양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금천구	송파구
강북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마포구		

- 관할 자치구 유휴 인력 존재 시 지원

□ 사전확인증(대체교사 신청 확인서) 제도 운영

- 신청주체 : 어린이집(보육교사)

- 신청사유 : 대체교사 신청 시(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신청 시)

- 신청방법 : 사전확인 신청서(붙임2)를 우편, 메일,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확인주체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파견 : 중복지원 및 신청기간에 파견 가능 여부 등 확인

- 인건비 지원 :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 사전확인증 발급 후 조치 사항 :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현장확인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청자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사전확인증과 대체교사 임면·보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

□ 대체교사 지원 전담 관리자 배치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관리를 위한 인력(대체교사)을 배치할 수 있음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4명

▸ 대체교사 예산 배분, 실적 수합, 교육 및 홍보 등 강화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구별 1명
- 대체교사 관리자도 업무량 및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파견 가능

※ 대체교사 관리자의 역할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 ⇒ 대체교사 신청 균형 분배, 유희인력 최소화
-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근무내역 확인(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집중 점검)
- 기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무

□ 경 력 관 리

- 대체교사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 입력·관리
 - 임면사항 입력·관리 시 관련서류 및 사전확인증 징구

□ 근 로 조 건

○ 보수

- 채용된 대체교사 : 1,616천원(근무환경개선비 월 15만원 별도)
 - ① 교통비 및 퇴직적립금, 보험료 등 등제비용 포함
 - ② 근무환경개선비 15만원 지급 :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대체교사
 - ※ 처우개선비 15만원 지급(대체교사 관리자)
 - 관할 자치구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15일 이상 근무시 구 대체교사 관리자에게 지급
 - 25개 자치구 중 19개 이상 자치구 대체교사가 모두 월 15일 이상 근무시 서울시 총괄관리자에게 지급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 5만원/1일
 - ▶ 예산교부 : 서울시 → 자치구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 대체교사
- 대체교사가 무단결근 시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원장과 대체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대 조정 및 초과근무 가능
 - ※ 추가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4대 보험 및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대체교사 채용기준

○ 자격조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예정자 포함)

○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 위반(아동 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자
- 어린이집 직접 채용 시(인건비지원)에는 시설장 및 대표자의 가족 배제

□ 근태관리(어린이집)

○ 대체교사의 근무상황은 파견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

○ 대체교사의 근무 상황부를 비치하고 매일 서명토록 하여 근무종료 시 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음

- 붙임 : 1. 2013년도 대체교사 파견사업 자치구별 배정인원
2. 대체교사 사전확인 신청서
3. 사전확인증. 끝.

【붙임 1】

’ 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별 배정인원

(단위 : 명)

자치구	배정인원					비 고
	계	업무 구분		예산 구분		
		관리자	대체교사	국비지원	시비지원	
계	246	29	217	103	143	
서울시	4	4	0	2	2	
종로구	3	1	2	1	2	
중구	3	1	2	1	2	
용산구	5	1	4	2	3	
성동구	7	1	6	3	4	
광진구	9	1	8	4	5	
동대문구	8	1	7	3	5	
중랑구	10	1	9	4	6	
성북구	12	1	11	5	7	
강북구	8	1	7	3	5	
도봉구	11	1	10	5	6	
노원구	19	1	18	8	11	
은평구	12	1	11	5	7	
서대문구	7	1	6	3	4	
마포구	9	1	8	4	5	
양천구	13	1	12	6	7	
강서구	15	1	14	6	9	
구로구	12	1	11	5	7	
금천구	8	1	7	3	5	
영등포구	9	1	8	4	5	
동작구	9	1	8	4	5	
관악구	11	1	10	5	6	
서초구	7	1	6	3	4	
강남구	8	1	7	3	5	
송파구	15	1	14	6	9	
강동구	12	1	11	5	7	

【붙임 2】

대체교사 지원
사전확인 신청서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청기간 :

신청사유 :

위 신청사유에 따라 위 신청기간에 대체교사 (파견/인건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직책 : 성명 : (인)

수신자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유의사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3】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 전 확 인 증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 청 기 간 :

신 청 사 유 :

위 신청의 지원사유 및 중복지원 여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 ○ (인)

<유 의 사 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